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국제협력관 및”을 “국제농식품협력관 및”으로, “국제협력관은”을 “국제농식품협력관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국제협력관”을 “국제농식품협력관”으로 하며, 같은 조 제7항제11호 중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법」”을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법」”으로 하고, 같은 조 제1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좌한 다”를 “보좌한다”로 하며, 같은 항 제19호 중 “국제협력관”을 “국제농식품협력관”으로 한다.

제8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4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제2항부터 제4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중전의 제4항) 중 “농촌정책과·농촌공간계획과·농촌사회서비스과·농촌경제과·농촌여성정책팀·농촌재생지원팀·동물복지정책과·농촌탄소중립정책과 및 반려산업동물의료팀”을 “농촌정책과·농촌공간계획과·농촌사회서비스과·농촌경제과 및 농촌재생지원팀”으로, “농촌여성정책팀장·농촌재생지원팀장 및 반려산업동물의료팀장”을 “농촌재생지원팀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중전의 제5항)제7호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16호 중 “농업”을 “농업·농촌”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중전의 제6항)에 제11호부터

제14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1.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의 운용
12. 농촌경관 종합대책의 수립 및 시행
13. 경관보전직접지불제도의 시행에 관한 사항
14. 농업유산 지정·관리에 관한 사항

제8조제7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8항을 제6항으로 하며, 같은 항(종전의 제8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22호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2호를 제22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2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계획 수립
2.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운영
23. 「농업인들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의 운영

제8조제9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10항을 제7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11항 및 제12항을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13항을 제5항으로 하며, 같은 항(종전의 제1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반려산업동물의료팀장”을 “농촌사회서비스과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부터 제7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8호 중 “반려동물 안전관리”를 “농촌 학생 장학사업”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9호 및 제10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농촌 필수·생활서비스 등 복지증진시책의 수립 및 추진
2. 「농촌 지역 공동체 기반 경제·사회 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법률」의 운영

3. 농업인에 대한 건강보험료 및 연금보험료 지원에 관한 사항
4. 고령 등 취약계층 농업인 복지지원에 관한 사항
5. 농촌 서비스 공동체 등의 육성에 관한 사항
6. 사회적 농업 육성 등 농촌의 사회적경제 활성화에 관한 사항
7. 농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 등에 관한 사항
9. 농촌 전통문화 및 문화사업 육성에 관한 사항
10. 농촌 교육여건 등의 개선에 관한 사항

제9조의 제목 “(농업혁신정책실)”을 “(농산업혁신정책실)”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 중 “농업혁신정책실장”을 각각 “농산업혁신정책실장”으로 하며, 같은 항 중 “농식품혁신정책관·농업정책관 및 식품산업정책관으로”를 “농산업혁신정책관·농업정책관·농촌소득에너지정책관 및 식품산업정책관으로”로, “농식품혁신정책관·농업정책관 및 식품산업정책관은”을 “농산업혁신정책관·농업정책관·농촌소득에너지정책관 및 식품산업정책관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농식품혁신정책관”을 “농산업혁신정책관”으로, “농업혁신정책실장”을 “농산업혁신정책실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제32호”를 “제26호”로, “농업혁신정책실장”을 “농산업혁신정책실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0항을 제25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7항을 제20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제6항 및 제7항으로 한다.

제9조제18항을 제23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4항을 제18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9항부터 제13항까지를 각각 제10항부터 제14항까지로 하고, 같

은 조에 제5항 및 제9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농촌소득에너지정책관은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2조제3항제27호부터 제37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농산업혁신정책실장을 보좌한다.

⑨ 첨단기자재종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농업기계화 촉진법」의 운용
2. 농업기계의 안전관리 및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3. 농업기계화 및 농업기계 이용 촉진에 관한 사항
4. 삭제
5. 「비료관리법」의 운용
6. 비료의 수급·품질관리 및 제조·수출입에 관한 사항
7. 토양의 지력증진에 관한 사항
8. 「농약관리법」의 운용
9. 농약의 안전성 및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
10. 종자산업 육성 정책의 수립 및 시행
11. 종자산업 관련 대외협력
12. 국립종자원에 대한 지도·감독
13. 「종자산업법」 및 「식물신품종 보호법」의 운용

제9조제6항(중전의 제5항) 중 “농업혁신정책실장”을 “농산업혁신정책실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항(중전의 제6항) 중 “농업혁신정책실에 스마트농업정책과·첨단기자재종자과·과학기술정책과·친환경농업과·빅

데이터전략팀 · 농업경영정책과 · 농지과 · 공익직불정책과 · 농업금융정책과 · 재해보험정책과 · 청년농육성정책팀 · 푸드테크정책과 · 식품외식산업과 · 농식품수출진흥”을 “농산업혁신정책실에 스마트농업정책과 · 첨단기자재종자과 · 과학기술정책과 · 친환경농업과 · 빅데이터전략팀 · 농업정책과 · 농지과 · 농업금융정책과 · 농촌여성정책과 · 청년농육성정책팀 · 농촌소득정책과 · 농업정책보험과 · 농촌에너지정책과 · 농업재해지원팀 · 농촌탄소중립추진팀 · 푸드테크정책과 · 식품외식산업과 · 농식품수출진흥”으로, “그린바이오산업팀장”을 “농업재해지원팀장 · 농촌탄소중립추진팀장 · 그린바이오산업팀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20항(중전의 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스마트농업정책과장”을 “농촌에너지정책과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농식품분야 신기술 · 신사업 업무”를 “농업 바이오매스(축산분뇨는 제외한다) 이용 촉진”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5호부터 제8호까지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19항 및 제21항을 각각 제24항 및 제26항으로 하며, 같은 항(중전의 제21항) 제6호 중 “「농수산생명자원의 보존 ·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농업생명자원의 보존 ·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로 하고, 같은 조에 제21항 및 제2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농식품 분야 신 · 재생 에너지 개발 및 이용에 관한 사항의 총괄 · 조정
2. 농촌지역 태양광 발전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

4. 농촌지역 에너지 자립 및 이용에 관한 사항의 조정·관리

㉑ 농업재해지원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농업재해대책 정책의 수립 등에 관한 사항
2. 농업재해지원 제도 운용에 관한 사항
3. 「농어업재해대책법」(농업재해대책에 관한 사항만 해당한다)의 운용
4. 농업재해상황실 운용 및 농업기상 정보의 수집·전파
5.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경감 대책 추진
6. 재해발생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7. 재난안전관리 업무 총괄

㉒ 농촌탄소중립추진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농식품분야 기후변화대응에 관한 업무의 기획·조정
2. 농식품분야 온실가스 감축업무의 계획 수립 및 시행
3. 농식품 분야 배출권거래제 지원 정책에 관한 사항
4. 농식품 분야 배출권거래제 관련 외부사업 온실가스 감축량의 등록·평가·검증·인증 등 상쇄제도 운영
5. 농식품 분야 배출권거래제 관련 협의에 관한 사항
6. 농식품 분야 탄소중립·녹색성장 중장기 종합계획의 수립 및 조정에 관한 사항
7.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의 대응에 관한 사항
8. 농업 분야 온실가스의 감축 및 기후변화 적응 관련 국제협력에 관

한 사항

9. 「탄소중립기본법」에 따른 기후위기 적응 대책의 수립·시행에 관

한 사항

10. 농식품기후변화대응센터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1. 탄소저감 인센티브에 관한 사항

제9조제8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첨단기자재종자과장”을 “스마트농업정책과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농업기계의 안전관리 및 사후관리”를 “농산업분야 신기술·신사업 업무”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농업기계화 및 농업기계 이용 촉진”을 “농산업분야 미래이슈 관리”로 하며,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6호 및 제7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8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9호를 제8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8호(중전의 제9호) 및 제10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11호부터 제14호까지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10항(중전의 제9항) 제10호 중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 육성법」”을 “「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법」”으로 한다.

1. 스마트팜 등 농산업 ICT 융복합 사업에 관한 사항

2. 농산업분야(스마트농업을 포함한다) 정책 기획 및 과제 관리에 관

한 사항

5. 스마트팜 혁신밸리 및 실증단지 조성·운영에 관한 사항

6. 스마트팜 청년창업 지원 및 임대형 스마트팜 조성·운영에 관한 사

항

7. 스마트팜 수출 및 관련 산업의 해외진출에 관한 사항

9. 농산업분야 ICT 기자재 등 표준화에 관한 사항

8.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운용

10. 그 밖에 농산업혁신정책관 소관 사무 중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제9조제13항(중전의 제1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업경영정책과장”을 “농업정책과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18항(중전의 제1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공익직불정책과장”을 “농촌소득정책과장”으로 하며, 같은 항 제7호 중 “경영이양직접지불제”를 “농지이양은퇴직접지불제”로 하고, 같은 조 제15항제14호 중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로 하며, 같은 조 제16항을 제19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19항(중전의 제16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항 제3호부터 제8호까지를 각각 제1호부터 제6호까지로 하며, 같은 항 제9호를 제7호로 하고, 같은 항 제6호(중전의 제8호) 중 “「농어업재해대책법」(농업재해대책에 관한 사항만 해당한다) 및 「농어업재해보험법」”을 “「농어업재해보험법」”으로 하며,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재해보험정책과장”을 “농업정책보험과장”으로 한다.

⑩ 농촌여성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여성농업인 정책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

2. 「여성농어업인 육성법」의 운영에 관한 사항
3. 여성농업인의 지위향상에 관한 사항
4. 여성농업인력의 경영능력 향상에 관한 사항
5. 여성농업인 정책관련 조사·연구에 관한 사항
6. 농촌여성·가정 등의 복지에 관한 사항
7. 여성농업인의 모성보호와 보육여건 개선 및 삶의 질 향상에 관한
사항
8. 여성농업인단체와의 협력 및 지원에 관한 사항
9. 여성농업인 노동여건 개선에 관한 사항
10. 여성농업인 일자리 창출에 관한 사항
11. 농업·농촌 분야 양성평등 의식·문화의 확산을 위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12. 농촌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사항

제10조를 제12조로 하고, 제10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동물복지정책국) ① 동물복지정책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 동물복지정책국에 동물복지정책과·반려산업동물의료과·동물보호과를 두되, 동물복지정책과장·반려산업동물의료과장은 부이사관·
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동물보호과장은 과학기술서기관·
서기관·수의연구관 또는 농업연구관으로 보한다.

③ 동물복지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동물복지종합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동물학대 방지 및 유실·유기동물 보호에 관한 사항
 3. 동물복지에 관한 교육, 홍보 및 연구에 관한 사항
 4. 삭제
 5. 삭제
 6. 동물실험윤리 정책에 관한 사항
 7. 「동물보호법」 및 「한국진도개 보호·육성법」의 운용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동물복지정책국 소관 사무 중 다른 과의 사무에 속하지 않는 사항
 9. 반려동물 보호기반 마련 및 지원에 관한 사항
 10. 반려동물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 ④ 반려산업동물의료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반려동물 관련 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2. 반려동물 관련 산업 및 영업 관리에 관한 사항
 3. 반려동물 양육 인프라 구축, 의료 및 보험 정책에 관한 사항
 4. 반려동물 관련 국가자격(행동지도사) 운영 및 민간자격 관리에 관한 사항
 5. 삭제
 6. 「수의사법」의 운용
 7. 수의인력의 수급 및 수의료 정책에 관한 사항

⑤ 동물보호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동물보호·관리에 관한 정책·제도의 개발·연구
2. 동물소유자, 동물판매업 및 동물장묘업 등록제 운영지원
3. 실험동물 우수 유전자원 개발·연구
4. 동물실험윤리 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5. 동물사육관리실태 조사 및 관련제도 개발
6. 동물보호감시관·명예감시관 제도 운영 지원
7. 동물보호 관련 민간단체와의 협력 및 교육·홍보 지원
8. 동물보호 관련 국제협력 및 조사·시험·연구
9. 동물복지축산의 확대와 동물복지축산농장 지원에 관한 사항

제12조(중전의 제10조) 제4항제3호 중 “구제역”을 “구제역 등 대·증가 축 가축질병”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제7호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8호를 제7호로 한다.

제11조제7항제1호 중 “양곡수급기본계획”을 “양곡수급계획”으로 하고, 같은 항 제16호를 제18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16호 및 제17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6. 쌀 소비촉진 업무에 관한 사항

17. 쌀 자조금 사업에 관한 사항

제11조제8항제8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11항제1호 중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직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제3항”을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

령」 제42조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12항제4호 중 “「축산자조금 조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로 하고, 같은 조 제16항제8호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12호 중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을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로 하고, 같은 조 제17항제4호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1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2.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의
운영

제11조제18항에 제14호 및 제1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4. 「농수산물자조금의 조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운영에 관한 사항

15. 원예농산물 자조금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제11조제20항제10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1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의 운영

15.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의 운영

제14조제2항 중 “방역감시과·동물검역과·역학조사과·질병진단과·위험평가과·동물보호과·동물약품관리과·동물약품평가과 및 가축질병방역센터를”을 “방역감시과·동물검역과·역학조사과·질병진단과·위험평가과·동물약품관리과·동물약품평가과·가축질병방역센터 및 축산물수출위생팀을”로, “동물보호과장은 과학기술서기관·서기관·수

의연구관 또는 농업연구관으로”를 “축산물수출위생팀장은 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수의사무관으로”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8호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9호를 제7호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중 “축산물”을 각각 “수입 축산물”로 하며, 같은 항 제10호 및 제11호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9항부터 제12항까지를 각각 제8항부터 제11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 제8항을 제12항으로 하고, 같은 항(중전의 제8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동물보호과장”을 “축산물수출위생팀장”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부터 제8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9항(중전의 제10항)제9호를 삭제한다.

1. 수출 축산물의 검역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2. 수출 축산물의 검역업무의 시행에 관한 사항
3. 수출 축산물의 검역에 관한 통계
4. 수출 축산물의 검역시행장의 관리
5. 농장·도축장 및 집유장의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 운영에 관한 사항
6. 도축장 및 집유장의 검사관의 위생관리, 검사 및 검사관·검사원의 교육에 관한 사항
7. 수입 쇠고기·돼지고기 이력관리에 관한 사항
8. 농장, 도축장 및 집유장에서의 축산물 등에 대한 잔류물질 검사·연구

제17조제4항제11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9항제10호 및 제11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5장의 제목 “농식품공무원교육원”을 “농식품인재개발원”으로 한다.

제25조의 제목 “(농식품공무원교육원)”을 “(농식품인재개발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농식품공무원교육원장”을 “농식품인재개발원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농식품공무원교육원”을 “농식품인재개발원”으로, ““교육원”이라 한다)에 운영지원과·교육기획과 및 전문교육과”를 ““인재원”이라 한다)에 운영지원과·교육기획개발과 및 교육운영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3호 중 “물품”을 “물품·도서”로 하며, 같은 항 제6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7호를 제6호로 한다.

제25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교육기획과장”을 “교육기획개발과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4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6호를 제4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인적자원개발(Human Resources Development; HRD) 총괄 기획
2. 교육훈련과정 설계·개발
5. 정보화 및 이러닝 시스템 등의 구축·관리
6. 학습데이터 종합관리 및 교육효과 분석

제25조제4항제7호부터 제11호까지 및 제13호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전문교육과장”을 “교육운영과장”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5호 및 제7호를 각각 삭제한다.

1. 교육훈련과정의 운영
2. 교육생의 선발·등록·학적 및 성적의 관리
3. 강의실·분임실·생활관 등 교육시설 운영
4. 교육생 설문조사 및 교육성적의 평가

제29조제1항 단서 중 “2명(6급”을 “3명(5급 1명, 6급”으로 한다.

제30조제3항 중 “농식품공무원교육원”을 “농식품인재개발원”으로 한다.

제38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8조(한시정원) 농어촌 기본소득 관련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2027년 12월 31일까지 별표 18에 따른 한시정원을 농림축산식품부에 둔다.

제39조의 제목 “[제38조로 이동]”을 “[제38조로 이동]”으로 한다.

별표 6 중 총계 “635”를 “664”로, 일반직 계 “631”을 “660”으로, 고위공무원단 “14”를 “15”로, 서기관 또는 과학기술서기관 “28”을 “31”로, 행정사무관·농업사무관·수의사무관·시설사무관·통계사무관·전산사무관·공업사무관·방송통신사무관·사서사무관 또는 환경사무관 “123”을 “133”으로, 행정주사·농업주사·수의주사·시설주사·통계주사·전산주사·공업주사·방재안전주사·방송통신주사·사서주사·환경주사·농업연구사·수의연구사·기록연구사 또는 농촌지도사 “100”을 “107”로, 행정주사보·농업주사보·수의주사보·시설주사보·통계주사보·전산주사보·공업주사보·방재안전주사보·방송통신주사보·사서주사보 또는 환경주사보 “46”을 “53”으로, 행정서기보 또는 농업서기보 “4”를

“7”로, 사무운영서기보 “18”을 “16”으로 한다.

별표 7 중 총계 “637”을 “666”으로, 일반직 계 “633”을 “662”로, 고위공무원단 “14”를 “15”로, 서기관 또는 과학기술서기관 “28”을 “31”로, 행정사무관·농업사무관·수의사무관·시설사무관·통계사무관·전산사무관·공업사무관·방송통신사무관·사서사무관 또는 환경사무관 “126”을 “137”로, 행정주사·농업주사·수의주사·시설주사·통계주사·전산주사·공업주사·방재안전주사·방송통신주사·사서주사·환경주사·농업연구사·수의연구사·기록연구사 또는 농촌지도사 “87”을 “93”으로, 행정주사보·농업주사보·수의주사보·시설주사보·통계주사보·전산주사보·공업주사보·방재안전주사보·방송통신주사보·사서주사보 또는 환경주사보 “51”을 “58”로, 행정서기보 또는 농업서기보 “2”를 “5”로, 사무운영서기보 “18”을 “16”으로 한다.

별표 8 중 총계 및 일반직 계 “1,167”을 각각 “1,157”로, 서기관 또는 과학기술서기관 “5”를 “4”로, 행정사무관·공업사무관·수의사무관·농업사무관·전산사무관·통계사무관·수의연구관 또는 농업연구관 “20”을 “19”로, 수의사무관 “10”을 “9”로, 수의사무관·농업사무관·수의연구관 또는 농업연구관 “3”을 “2”로, 행정주사·공업주사·수의주사·농업주사·전산주사·통계주사·수의연구사 또는 농업연구사 “62”를 “61”로, 행정주사보·공업주사보·수의주사보·농업주사보·전산주사보·통계주사보·수의연구사 또는 농업연구사 “94”를 “95”로, 수의주사보 “113”을 “112”로 한다.

별표 8 중 전산주사보 “7”을 “5”로, 행정서기보 또는 농업서기보 “6”을 “5”로, 행정서기보·농업서기보·공업서기보 또는 전산서기보 “11”을 “12”로, 운전서기보 “10”을 “9”로, 수의연구사 “93”을 “92”로, 수의연구사 또는 농업연구사 “1”을 “0”으로 한다.

별표 9 중 총계 및 일반직 계 “1,167”을 각각 “1,157”로, 서기관 또는 과학기술서기관 “5”를 “4”로, 행정사무관·공업사무관·수의사무관·농업사무관·전산사무관·통계사무관·수의연구관 또는 농업연구관 “22”를 “21”로, 수의사무관 “14”를 “13”으로, 수의사무관·농업사무관·수의연구관 또는 농업연구관 “3”을 “2”로, 행정주사·공업주사·수의주사·농업주사·전산주사·통계주사·수의연구사 또는 농업연구사 “64”를 “63”으로, 행정주사보·공업주사보·수의주사보·농업주사보·전산주사보·통계주사보·수의연구사 또는 농업연구사 “94”를 “95”로, 수의주사보 “106”을 “105”로 한다.

별표 9 중 전산주사보 “5”를 “3”으로, 행정서기보 또는 농업서기보 “6”을 “5”로, 행정서기보·농업서기보·공업서기보 또는 전산서기보 “11”을 “12”로, 운전서기보 “10”을 “9”로, 수의연구사 “90”을 “89”로, 수의연구사 또는 농업연구사 “1”을 “0”으로 한다.

별표 16에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농산업혁신정책실 농촌소득에너지정책관	1명	2027년 12월 31일까지
------------------------	----	-----------------

별표 16 중 “농촌정책국 동물복지환경정책관”을 “동물복지정책국”으로 하고, 같은 표예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동물복지정책국 반려산업동물의료과	2명	2027년 12월 31일까지
----------------------	----	-----------------

별표 17 1. 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단(존속기한: 2025년 12월 31일)을 다음과 같이 한다.

1. 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단(존속기한: 2027년 12월 31일)

별표 18을 신설한다.

농림축산식품부령 제360호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제1항 중 “2026년 2월 22일”을 “2028년 2월 22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2조 및 제3조는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신설한 기구의 존속기한) 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에 따라 이 규칙 시행으로 신설되는 농업재해지원팀 및 농촌탄소중립추진팀, 농림축산검역본부 축산물수출위생팀은 2028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존속기한까지 농업재해지원팀 및 농촌탄소중립추진팀, 농림축산검역본부 축산물수출위생팀이 분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지 않는 경우에는 같은 항에 따른 존속기한의 다음 날부터 농업재해지원팀이 분장하는 사항은 농업정책보험과장이, 농촌탄소중립추진팀이 분장하는 사항은 농촌에너지정책과장이, 농림축산검역본부 축산물수출위생팀이 분장하는 사항은 농림축산검역본부 방역감시과장이 분장한다.

제3조(총액인건비제로 상향 조정한 직급의 존속기한) 이 규칙 시행으로

직급이 상향 조정되는 별표 7의 정원 1명(행정사무관·농업사무관·수의사무관·시설사무관·통계사무관·전산사무관·공업사무관·방송통신사무관·사서사무관 또는 환경사무관 1명)은 2028년 12월 31일 까지 존속하며, 2029년 1월 1일 이후에는 그에 해당하는 정원은 별표 7의 정원 1명(행정주사·농업주사·수의주사·시설주사·통계주사·전산주사·공업주사·방재안전주사·방송통신주사·사서주사·환경주사·농업연구사·수의연구사·기록연구사 또는 농촌지도사 1명)으로 본다.

■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 18]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공무원 한시정원표(제38조 관련)

1. 제38조 관련 한시정원(존속기한: 2027년 12월 31일)

총계	2
일반직 계	2
행정사무관 · 농업사무관 · 수의사무관 · 시설사무관 · 통계사무관 · 전산사무관 · 공업사무관 · 방송통 신사무관 · 사서사무관 또는 환경사무관	1
행정주사보 · 농업주사보 · 수의주사보 · 시설주사보 · 통계주사보 · 전산주사보 · 공업주사보 · 방재안전 주사보 · 방송통신주사보 · 사서주사보 또는 환경 주사보	1

한다.

1. ~ 10. (생략)

11.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법」의 운영

12. · 13. (생략)

⑧ ~ ⑩ (생략)

⑪ 국제협력총괄과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1. ~ 18. (생략)

19. 그 밖에 국제협력관 소관 사무 중 다른 과의 사무에 속하지 않는 사항

⑫ ~ ⑭ (생략)

제8조(농촌정책국) ① (생략)

②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1조제1항에 따라 농촌정책국장 밑에 두는 보좌기관은 동물복지환경정책관으로 하며, 동물복지환경정책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③ 동물복지환경정책관은 「농

1. ~ 10. (현행과 같음)

11.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법」-----

12. · 13. (현행과 같음)

⑧ ~ ⑩ (현행과 같음)

⑪ -----
----- 보좌한다.

1. ~ 18. (현행과 같음)

19. ----- 국제농식품협력관 -----

⑫ ~ ⑭ (현행과 같음)

제8조(농촌정책국) ① (현행과 같음)

<삭제>

<삭제>

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1조제3항제22호부터 제29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농촌정책국장을 보좌한다.

④ 농촌정책국에 농촌정책과 · 농촌공간계획과 · 농촌사회서비스과 · 농촌경제과 · 농촌여성정책팀 · 농촌재생지원팀 · 동물복지정책과 · 농촌탄소중립정책과 및 반려산업동물의료팀을 두되, 각 과장은 부이사관 · 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농촌여성정책팀장 · 농촌재생지원팀장 및 반려산업동물의료팀장은 과학기술서기관 · 서기관 · 농업사무관 · 수의사무관 · 공업사무관 · 시설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⑤ 농촌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 6. (생략)
7. 농촌개발연구사업에 관한 사항
8. ~ 15. (생략)
16. 농업 관련 정책연구과제 개발에 관한 사항

② ----- 농촌정책과 · 농촌공간계획과 · 농촌사회서비스과 · 농촌경제과 및 농촌재생지원팀-----

----- 농촌재생지원팀장-----

③ -----

1. ~ 6. (현행과 같음)
<삭제>

8. ~ 15. (현행과 같음)
16. 농업 · 농촌-----

17. ~ 20. (생략)

⑥ 농촌공간계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삭제

2. ~ 10. (생략)

<신설>

<신설>

<신설>

<신설>

⑦ 농촌사회서비스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농촌 복지증진시책의 수립 및 추진

2. 농업인에 대한 건강보험료 및 연금보험료 지원에 관한 사항

3. 삭제

4. 삭제

5. 삭제

6. 삭제

7. 삭제

8. 삭제

17. ~ 20. (현행과 같음)

④ -----
-----.

2. ~ 10. (현행과 같음)

11.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의 운용

12. 농촌경관 종합대책의 수립 및 시행

13. 경관보전직접지불제도의 시행에 관한 사항

14. 농업유산 지정·관리에 관한 사항

<삭제>

9. 고령 등 취약계층 농업인 복지 지원에 관한 사항

10. 삭제

11. 농촌 공동체회사 등의 육성
에 관한 사항

12. 삭제

13. 삭제

14. 삭제

15. 삭제

16. 사회적 농업 육성 등 농촌의
사회적경제 활성화에 관한 사
항

17. 삭제

⑧ 농촌경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농촌 산업정책에 관한 계획
의 수립 및 조정

<신 설>

2. (생략)

3. ~ 21. (생략)

22. 농촌경관 종합대책의 수립
및 시행

23. 경관보전직접지불제도의 시
행에 관한 사항

⑥ -----
-----.

1.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
원에 관한 계획 수립

2.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운영

22. (현행 제2호와 같음)

3. ~ 21. (현행과 같음)

<삭 제>

23. 「농업인등의 농외소득 활
동 지원에 관한 법률」의 운
영

<삭 제>

⑨ 농촌여성정책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여성농업인 정책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
2. 「여성농어업인 육성법」의 운영에 관한 사항
3. 여성농업인의 지위향상에 관한 사항
4. 여성농업인력의 경영능력 향상에 관한 사항
5. 여성농업인 정책관련 조사·연구에 관한 사항
6. 농촌여성·가정 등의 복지에 관한 사항
7. 여성농업인의 모성보호와 보육여건 개선 및 삶의 질 향상에 관한 사항
8. 여성농업인단체와의 협력 및 지원에 관한 사항
9. 여성농업인 노동여건 개선에 관한 사항
10. 여성농업인 일자리 창출에 관한 사항
11. 농업·농촌 분야 양성평등 의식·문화의 확산을 위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12. 농촌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사항

13. 농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 등에 관한 사항

14. 농촌 학생 장학사업에 관한 사항

15. 농촌 전통문화 및 문화사업 육성에 관한 사항

16. 농촌 교육여건 등의 개선에 관한 사항

⑩ (생략)

⑪ 동물복지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동물복지종합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동물학대 방지 및 유실·유기동물 보호에 관한 사항

3. 동물복지에 관한 교육, 홍보 및 연구에 관한 사항

4. 동물복지축산의 확대와 동물복지축산농장 지원에 관한 사항

5. 삭제

6. 동물실험윤리 정책에 관한 사항

7. 「동물보호법」 및 「한국진

⑦ (현행 제10항과 같음)

<삭제>

도개 보호·육성법」의 운용
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동물복지환경정책관
소관 사무 중 다른 과의 사무
에 속하지 않는 사항

⑫ 농촌탄소중립정책과장은 다
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농식품 분야 신·재생 에너
지 개발 및 이용에 관한 사항
의 총괄·조정

2. 농촌지역 태양광 발전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

3. 농업 바이오매스(축산분뇨는
제외한다) 이용 촉진에 관한
사항

4. 농촌지역 에너지 자립 및 이
용에 관한 사항의 조정·관리

5. 농식품분야 기후변화대응에
관한 업무의 기획·조정
에 관한 사항

6. 농식품분야 온실가스 감축업
무의 계획 수립 및 시행

7. 농식품 분야 배출권거래제
지원 정책에 관한 사항

8. 농식품 분야 배출권거래제
관련 외부사업 온실가스 감축

<삭 제>

량의 등록·평가·검증·인증
등 상쇄제도 운영

9. 농식품 분야 배출권거래제
관련 협의에 관한 사항

10. 농식품 분야 탄소중립·녹
색성장 중장기 종합계획의 수
립 및 조정에 관한 사항

11.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
회의 대응에 관한 사항

12. 농업 분야 온실가스의 감축
및 기후변화 적응 관련 국제
협력에 관한 사항

13. 「탄소중립기본법」에 따른
기후위기 적응 대책의 수립·
시행에 관한 사항

14. 농식품기후변화대응센터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5. 탄소저감 인센티브에 관한
사항

⑬ 반려산업동물의료팀장은 다
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반려동물 관련 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2. 반려동물 관련 산업 및 영업
관리에 관한 사항

⑤ 농촌사회서비스과장-----
-----.

1. 농촌 필수·생활서비스 등
복지증진시책의 수립 및 추진

2. 「농촌 지역 공동체 기반 경
제·사회 서비스 활성화에 관
한 법률」의 운영

3. 반려동물 양육 인프라 구축, 의료 및 보험 정책에 관한 사항

4. 반려동물 관련 국가자격(행동지도사) 운영 및 민간자격 관리에 관한 사항

5. 반려동물 보호기반 마련 및 지원에 관한 사항

6. 「수의사법」의 운용

7. 수의인력의 수급 및 수의료 정책에 관한 사항

8. 반려동물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신 설>

<신 설>

제9조(농업혁신정책실) ① 농업혁신정책실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한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2조제1항에 따

3. 농업인에 대한 건강보험료 및 연금보험료 지원에 관한 사항

4. 고령 등 취약계층 농업인 복지 지원에 관한 사항

5. 농촌 서비스 공동체 등의 육성에 관한 사항

6. 사회적 농업 육성 등 농촌의 사회적경제 활성화에 관한 사항

7. 농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 등에 관한 사항

8. 농촌 학생 장학사업-----
--

9. 농촌 전통문화 및 문화사업 육성에 관한 사항

10. 농촌 교육여건 등의 개선에 관한 사항

제9조(농산업혁신정책실) ① 농산업혁신정책실장-----

-----.

② -----

라 농업혁신정책실장 밑에 두는 보좌기관은 농식품혁신정책관 · 농업정책관 및 식품산업정책관으로 하며, 농식품혁신정책관 · 농업정책관 및 식품산업정책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③ 농식품혁신정책관은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2조제3항제1호부터 제12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농업혁신정책실장을 보좌한다.

④ 농업정책관은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2조제3항제13호부터 제32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농업혁신정책실장을 보좌한다.

<신 설>

⑤ 식품산업정책관은 「농림축

-- 농산업혁신정책실장 -----
----- 농산업혁신정책관 · 농업정책관 · 농촌소득에너지정책관 및 식품산업정책관으로 -----
----- 농산업혁신정책관 · 농업정책관 · 농촌소득에너지정책관 및 식품산업정책관은 -----
--.

③ 농산업혁신정책관-----

----- 농산업혁신정책실장-----.

④ -----
----- 제26호-----
----- 농산업혁신정책실장-----.

⑤ 농촌소득에너지정책관은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2조제3항제27호부터 제37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농산업혁신정책실장을 보좌한다.

⑥ -----

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2조제3항제33호부터 제46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농업혁신정책실장을 보좌한다.

⑥ 농업혁신정책실에 스마트농업정책과 · 첨단기자재종자과 · 과학기술정책과 · 친환경농업과 · 빅데이터전략팀 · 농업경영정책과 · 농지과 · 공익직불정책과 · 농업금융정책과 · 재해보험정책과 · 청년농육성정책팀 · 푸드테크정책과 · 식품외식산업과 · 농식품수출진흥과 및 그린바이오산업팀을 두되, 과학기술정책과장 및 첨단기자재종자과장은 부이사관 · 과학기술서기관 · 서기관 또는 농업연구관으로, 빅데이터전략팀장은 과학기술서기관 · 서기관 · 농업사무관 · 전산사무관 · 행정사무관 또는 통계사무관으로, 청년농육성정책팀장 및 그린바이오산업팀장은 과학기술서기관 · 서기관 · 농업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다른 과장은 부이사관 · 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

----- 농산업혁신정책실장-----.

⑦ 농산업혁신정책실에 스마트농업정책과 · 첨단기자재종자과 · 과학기술정책과 · 친환경농업과 · 빅데이터전략팀 · 농업정책과 · 농지과 · 농업금융정책과 · 농촌여성정책과 · 청년농육성정책팀 · 농촌소득정책과 · 농업정책보험과 · 농촌에너지정책과 · 농업재해지원팀 · 농촌탄소중립추진팀 · 푸드테크정책과 · 식품외식산업과 · 농식품수출진흥-----

----- 농업재해지원팀장 · 농촌탄소중립추진팀장 · 그린바이오산업팀장-----

다.

⑦ 스마트농업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스마트팜 등 농식품 ICT 융복합 사업에 관한 사항

2. 농업생명분야(스마트농업을 포함한다) 정책 기획 및 과제 관리에 관한 사항

3. 농식품분야 신기술·신사업 업무에 관한 사항

4. 농식품분야 미래이슈 관리에 관한 사항

5. 스마트팜 혁신밸리 및 실증 단지 조성·운영에 관한 사항

6. 스마트팜 청년창업 지원 및 임대형 스마트팜 조성·운영에 관한 사항

7. 스마트팜 수출 및 관련 산업의 해외진출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농식품혁신정책관 소관 사무 중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신 설>

--.

⑳ 농촌에너지정책과장-----
-----.

1. 농식품 분야 신·재생 에너지 개발 및 이용에 관한 사항의 총괄·조정

2. 농촌지역 태양광 발전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

3. 농업 바이오매스(축산분뇨는 제외한다) 이용 촉진-----

4. 농촌지역 에너지 자립 및 이용에 관한 사항의 조정·관리

<삭 제>

<삭 제>

<삭 제>

<삭 제>

㉑ 농업재해지원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 설>

1. 농업재해대책 정책의 수립 등에 관한 사항
 2. 농업재해지원 제도 운용에 관한 사항
 3. 「농어업재해대책법」(농업재해대책에 관한 사항만 해당한다)의 운용
 4. 농업재해상황실 운용 및 농업기상 정보의 수집·전파
 5.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경감 대책 추진
 6. 재해발생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7. 재난안전관리 업무 총괄
- ② 농촌탄소중립추진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농식품분야 기후변화대응에 관한 업무의 기획·조정에 관한 사항
 2. 농식품분야 온실가스 감축업무의 계획 수립 및 시행
 3. 농식품 분야 배출권거래제 지원 정책에 관한 사항
 4. 농식품 분야 배출권거래제 관련 외부사업 온실가스 감축량의 등록·평가·검증·인증

⑧ 첨단기자재종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농식품 ICT 기자재·통신 표준화에 관한 사항
2. 「농업기계화 촉진법」의 운용
3. 농업기계의 안전관리 및 사

등 상쇄제도 운영

5. 농식품 분야 배출권거래제 관련 협의에 관한 사항
6. 농식품 분야 탄소중립·녹색성장 중장기 종합계획의 수립 및 조정에 관한 사항
7.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회의 대응에 관한 사항
8. 농업 분야 온실가스의 감축 및 기후변화 적응 관련 국제 협력에 관한 사항
9. 「탄소중립기본법」에 따른 기후위기 적응 대책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10. 농식품기후변화대응센터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1. 탄소저감 인센티브에 관한 사항

⑧ 스마트농업정책과장-----
-----.

1. 스마트팜 등 농산업 ICT 융복합 사업에 관한 사항
2. 농산업분야(스마트농업을 포함한다) 정책 기획 및 과제 관리에 관한 사항
3. 농산업분야 신기술·신사업

<p>후관리에 관한 사항</p> <p>4. <u>농업기계화 및 농업기계 이 용 촉진에 관한 사항</u> <신 설></p> <p>6. 「비료관리법」의 운용</p> <p>7. <u>비료의 수급·품질관리 및 제조·수출입에 관한 사항</u></p> <p>8. <u>토양의 지력증진에 관한 사 항</u> <신 설></p> <p>9. 「농약관리법」의 운용</p> <p>10. <u>농약의 안전성 및 품질관리 에 관한 사항</u></p> <p>11. <u>종자산업 육성 정책의 수립 및 시행</u></p> <p>12. <u>종자산업 관련 대외협력</u></p> <p>13. <u>국립종자원에 대한 지도· 감독</u></p> <p>14. 「종자산업법」 및 「식물신 품종보호법」의 운용</p>	<p>업무-----</p> <p>4. <u>농산업분야 미래이슈 관리-- -----</u></p> <p>5. <u>스마트팜 혁신밸리 및 실증 단지 조성·운영에 관한 사항</u></p> <p>6. <u>스마트팜 청년창업 지원 및 임대형 스마트팜 조성·운영 에 관한 사항</u></p> <p>7. <u>스마트팜 수출 및 관련 산업 의 해외진출에 관한 사항</u> <삭 제></p> <p>9. <u>농산업분야 ICT 기자재 등 표준화에 관한 사항</u></p> <p>8.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 에 관한 법률」의 운용</p> <p>10. <u>그 밖에 농산업혁신정책관 소관 사무 중 다른 과의 주관 에 속하지 않는 사항</u> <삭 제></p> <p><삭 제></p> <p><삭 제></p> <p><삭 제></p>
--	---

<신 설>

⑨ 과학기술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⑨ 첨단기자재종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농업기계화 촉진법」의 운용
2. 농업기계의 안전관리 및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3. 농업기계화 및 농업기계 이용 촉진에 관한 사항
4. 삭제
5. 「비료관리법」의 운용
6. 비료의 수급·품질관리 및 제조·수출입에 관한 사항
7. 토양의 지력증진에 관한 사항
8. 「농약관리법」의 운용
9. 농약의 안전성 및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
10. 종자산업 육성 정책의 수립 및 시행
11. 종자산업 관련 대외협력
12. 국립종자원에 대한 지도·감독
13. 「종자산업법」 및 「식물신품종 보호법」의 운용

⑩ -----
-----.

1. ~ 9. (생략)

10. 「농림수산물과학기술 육성법」의 운용

11. ~ 14. (생략)

⑩ · ⑪ (생략)

⑫ 농업경영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 19. (생략)

⑬ (생략)

⑭ 공익직불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 6. (생략)

7. 경영이양직접지불제에 관한 사항

8. (생략)

⑮ 농업금융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 12. (생략)

13. 삭제

14.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농업협동조합법」, 「농어업인 부채경감에 관한 특별조치법」 및 「농림수산물투자조합 결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운

1. ~ 9. (현행과 같음)

10. 「농림수산물과학기술 육성법」-----

11. ~ 14. (현행과 같음)

⑪ · ⑫ (현행 제10항 및 제11항과 같음)

⑬ 농업정책과장-----
-----.

1. ~ 19. (현행과 같음)

⑭ (현행 제13항과 같음)

⑮ 농촌소득정책과장-----
-----.

1. ~ 6. (현행과 같음)

7. 농지이양은퇴직접지불제-----

8. (현행과 같음)

⑮ -----
-----.

1. ~ 12. (현행과 같음)

14. -----

「농림수산물투자조합 결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용에 관한 사항

15. ~ 18. (생략)

<신설>

15. ~ 18. (현행과 같음)

⑯ 농촌여성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여성농업인 정책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

2. 「여성농어업인 육성법」의 운영에 관한 사항

3. 여성농업인의 지위향상에 관한 사항

4. 여성농업인력의 경영능력 향상에 관한 사항

5. 여성농업인 정책관련 조사·연구에 관한 사항

6. 농촌여성·가정 등의 복지에 관한 사항

7. 여성농업인의 모성보호와 보육여건 개선 및 삶의 질 향상에 관한 사항

8. 여성농업인단체와의 협력 및 지원에 관한 사항

9. 여성농업인 노동여건 개선에 관한 사항

10. 여성농업인 일자리 창출에 관한 사항

11. 농업·농촌 분야 양성평등

⑩ 재해보험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농업재해 대책 추진 및 농업 기상 정보의 수집·전파

2.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경감 대책 추진

3. ~ 7. (생략)

8. 「농어업재해대책법」(농업재해대책에 관한 사항만 해당한다) 및 「농어업재해보험법」(농작물재해보험 및 가축재해보험에 관한 사항만 해당한다)의 운용

9. (생략)

⑪ (생략)

⑫ ~ ⑭ (생략)

⑮ 그린바이오산업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 5. (생략)

6. 「농수산생명자원의 보존·

의식·문화의 확산을 위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12. 농촌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사항

⑯ 농업정책보험과장-----
-----.

<삭제>

<삭제>

1. ~ 5. (현행 제3호부터 제7호까지와 같음)

6. 「농어업재해보험법」-----
--

7. (현행 제9호와 같음)

⑰ (현행과 같음)

⑲ ~ ㉑ (현행 제18항부터 제20항까지와 같음)

⑳ -----
-----.

1. ~ 5. (현행과 같음)

6. 「농업생명자원의 보존·관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기능성 양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운용

<신 설>

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동물복지정책국) ① 동물복지정책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 동물복지정책국에 동물복지정책과·반려산업동물의료과·동물보호과를 두되, 동물복지정책과장·반려산업동물의료과장은 부이사관·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동물보호과장은 과학기술서기관·서기관·수의연구관 또는 농업연구관으로 보한다.

③ 동물복지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동물복지종합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동물학대 방지 및 유실·유기동물 보호에 관한 사항
3. 동물복지에 관한 교육, 홍보

및 연구에 관한 사항

4. 삭제

5. 삭제

6. 동물실험윤리 정책에 관한
사항

7. 「동물보호법」 및 「한국진
도개 보호·육성법」의 운용
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동물복지정책국 소
관 사무 중 다른 과의 사무에
속하지 않는 사항

9. 반려동물 보호기반 마련 및
지원에 관한 사항

10. 반려동물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④ 반려산업동물의료과장은 다
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반려동물 관련 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2. 반려동물 관련 산업 및 영업
관리에 관한 사항

3. 반려동물 양육 인프라 구축,
의료 및 보험 정책에 관한 사
항

4. 반려동물 관련 국가자격(행
동지도사) 운영 및 민간자격

관리에 관한 사항

5. 삭제

6. 「수의사법」의 운용

7. 수의인력의 수급 및 수의료
정책에 관한 사항

⑤ 동물보호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동물보호·관리에 관한 정책
· 제도의 개발·연구

2. 동물소유자, 동물판매업 및
동물장묘업 등록제 운영지원

3. 실험동물 우수 유전자원 개
발·연구

4. 동물실험윤리 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5. 동물사육관리실태 조사 및
관련제도 개발

6. 동물보호감시관·명예감시관
제도 운영 지원

7. 동물보호 관련 민간단체와의
협력 및 교육·홍보 지원

8. 동물보호 관련 국제협력 및
조사·시험·연구

9. 동물복지축산의 확대와 동물
복지축산농장 지원에 관한 사
항

제10조(방역정책국) ① ~ ③ (생략)

④ 구제역방역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2. (생략)
3. 구제역 긴급행동지침(SOP) 운영

4. (생략)

⑤ 조류인플루엔자방역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 6. (생략)
7. 구제역·조류인플루엔자 등 백신 수급계획 수립 및 관리

8. (생략)

제11조(식량정책실) ① ~ ⑥ (생략)

⑦ 식량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식량정책 총괄 및 양곡수급 기본계획의 수립·조정

2. ~ 15. (생략)

<신설>

<신설>

16. (생략)

제12조(방역정책국)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
-----.

1. 2. (현행과 같음)
3. 구제역 등 대·중가축 가축 질병 -----
--

4. (현행과 같음)

⑤ -----
-----.

1. ~ 6. (현행과 같음)

<삭제>

7. (현행 제8호와 같음)

제11조(식량정책실) ① ~ ⑥ (현행과 같음)

⑦ -----
-----.

1. ----- 양곡수급 계획-----

2. ~ 15. (현행과 같음)

16. 쌀 소비촉진 업무에 관한 사항

17. 쌀 자조금 사업에 관한 사항

18. (현행 제16호와 같음)

⑧ 식량산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 6. (생략)

7. 삭제

8. 쌀 자조금 사업에 관한 사항

⑨·⑩ (생략)

⑪ 전략작물육성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전략작물(「농업·농촌 공익 기능 증진 직접직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제3항에 따른 전략작물을 말한다. 이하 같다) 육성계획의 수립 및 추진

2. ~ 6. (생략)

⑫ 축산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 3. (생략)

4. 「축산법」, 「전통 소싸움경기에 관한 법률」, 「한국마사회법」, 「말산업 육성법」, 「도축장 구조조정법」 및 「축산자조금 조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운용

5. (생략)

⑬ ~ ⑮ (생략)

⑧ -----
-----.

1. ~ 6. (현행과 같음)

<삭제>

⑨·⑩ (현행과 같음)

⑪ -----
-----.

1. ----- 「농업·농촌 공익 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제3항-----

2. ~ 6. (현행과 같음)

⑫ -----
-----.

1. ~ 3. (현행과 같음)

4. -----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5. (현행과 같음)

⑬ ~ ⑮ (현행과 같음)

⑩ 유통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 7. (생략)

8. 원예농산물 자조금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9. ~ 11. (생략)

12.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및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법」의 운용

13. · 14. (생략)

⑪ 식생활소비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 3. (생략)

4.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의 운용

5. ~ 11. (생략)

12.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의 운용

13. ~ 15. (생략)

⑫ 원예산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 13. (생략)

<신설>

⑩ -----
-----.

1. ~ 7. (현행과 같음)

<삭제>

9. ~ 11. (현행과 같음)

12.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

--

13. · 14. (현행과 같음)

⑪ -----
-----.

1. ~ 3. (현행과 같음)

<삭제>

5. ~ 11. (현행과 같음)

12.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의 운용

13. ~ 15. (현행과 같음)

⑫ -----
-----.

1. ~ 13. (현행과 같음)

14. 「농수산물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의 운용에

<신 설>

⑱ (생 략)

⑳ 농축산위생품질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 9. (생 략)

10.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의 운용

11. ~ 14. (생 략)

<신 설>

제14조(동물질병관리부) ① (생 략)

② 동물질병관리부에 방역감시과 · 동물검역과 · 역학조사과 · 질병진단과 · 위협평가과 · 동물보호과 · 동물약품관리과 · 동물약품평가과 및 가축질병방역센터를 두되, 방역감시과장은 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동물보호과장은 과학기술서기관 · 서기관 · 수의연구관 또는 농업연구관으로, 다른 과장은 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수의연구관으로, 가축질병방역센터장은

관한 사항

15. 원예농산물 자조금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⑱ (현행과 같음)

⑳ -----
-----.

1. ~ 9. (현행과 같음)

10.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의 운용

11. ~ 14. (현행과 같음)

15.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의 운용

제14조(동물질병관리부) ① (현행과 같음)

② ----- 방역감시과 · 동물검역과 · 역학조사과 · 질병진단과 · 위협평가과 · 동물약품관리과 · 동물약품평가과 · 가축질병방역센터 및 축산물수출위생팀을 -----

축산물수출위생팀장은 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수의사무관으로

수의사무관 또는 수의연구관으로 보한다.

③ 방역감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1. ~ 6. (생 략)
- 8. 수입 쇠고기·돼지고기 이력 관리에 관한 사항

9. (생 략)

④ 동물검역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1. 수출입 동물(그에 수반하는 사료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및 축산물의 검역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 2. 수출입 동물 및 축산물의 검역 업무의 시행에 관한 사항
- 3. 수출입 동물 및 축산물의 검역에 관한 통계
- 4. 수출입 동물 및 축산물의 검역시행장·해외작업장의 관리
- 5. ~ 8. (생 략)
- 9. 삭 제
- 10. 농장·도축장 및 집유장의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 운영에 관한 사항
- 11. 도축장 및 집유장의 검사관

-----.

③ -----
-----.

1. ~ 6. (현행과 같음)

<삭 제>

7. (현행 제9호와 같음)

④ -----
-----.

1. -----

----- 수입 축산물-----

2. ----- 수입 축산물-----

3. ----- 수입 축산물-----

4. ----- 수입 축산물-----

5. ~ 8. (현행과 같음)

<삭 제>

<삭 제>

의 위생관리, 검사 및 검사관
· 검사원의 교육에 관한 사항

⑤ ~ ⑦ (생략)

⑧ 동물보호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동물보호·관리에 관한 정책
· 제도의 개발·연구

2. 동물소유자 등록제, 동물판매
업 및 동물장묘업 등록제 운
영지원

3. 실험동물 우수 유전자원 개
발·연구

4. 동물실험윤리 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5. 동물사육관리실태 조사 및
관련제도 개발

6. 동물보호감시관·명예감시관
제도 운영 지원

7. 동물보호 관련 민간단체와의
협력 및 교육·홍보 지원

8. 동물보호 관련 국제협력 및
조사·시험·연구

⑨ (생략)

⑤ ~ ⑦ (현행과 같음)

⑫ 축산물수출위생팀장-----
-----.

1. 수출 축산물의 검역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2. 수출 축산물의 검역업무의
시행에 관한 사항

3. 수출 축산물의 검역에 관한
통계

4. 수출 축산물의 검역시행장의
관리

5. 농장·도축장 및 집유장의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
P) 운영에 관한 사항

6. 도축장 및 집유장의 검사관
의 위생관리, 검사 및 검사관
· 검사원의 교육에 관한 사항

7. 수입 쇠고기·돼지고기 이력
관리에 관한 사항

8. 농장, 도축장 및 집유장에서
의 축산물 등에 대한 잔류물
질 검사·연구

⑧ (현행 제9항과 같음)

⑩ 동물약품평가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 8. (생 략)

9. 농장, 도축장 및 집유장에서
의 축산물 등에 대한 잔류물
질 검사·연구

⑪·⑫ (생 략)

제17조(지역본부) ① ~ ③ (생 략)

④ 화물검역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 10. (생 략)

11. 동물복지 인증농장 점검 등
동물보호 관련 업무

⑤ ~ ⑧ (생 략)

⑨ 축산물위생검역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 9. (생 략)

10. 동물복지 인증농장 점검 등
동물보호 관련 업무

11. 가축전염병 방역(제주지역
본부에 한한다)

⑩ ~ ⑮ (생 략)

제5장 농식품공무원교육원

제25조(농식품공무원교육원) ①

⑨ -----
-----.

1. ~ 8. (현행과 같음)

<삭 제>

⑩·⑪ (현행 제11항 및 제12항
과 같음)

제17조(지역본부) ① ~ ③ (현행
과 같음)

④ -----
-----.

1. ~ 10. (현행과 같음)

<삭 제>

⑤ ~ ⑧ (현행과 같음)

⑨ -----
-----.

1. ~ 9. (현행과 같음)

<삭 제>

<삭 제>

⑩ ~ ⑮ (현행과 같음)

제5장 농식품인재개발원

제25조(농식품인재개발원) ① 농

농식품공무원교육원장은 고위
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
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
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 농식품공무원교육원(이하 이
장에서 “교육원”이라 한다)에
운영지원과·교육기획과 및 전
문교육과를 두되, 운영지원과장
은 부이사관·과학기술서기관
·서기관으로, 다른 과장은 과
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③ 운영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2. (생략)
3. 국유재산 및 물품의 관리

4. 5. (생략)

6. 원내 변화관리 업무에 관한
사항의 총괄

7. (생략)

④ 교육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장단기 교육훈련계획의 수립
·평가

식품인재개발원장-----

-----.

② 식품인재개발원-----
---- “인재원”이라 한다)에 운
영지원과·교육기획개발과 및
교육운영과-----

-----.

③ -----
-----.

1. 2. (현행과 같음)
3. ----- 물품·도서-----

4. 5. (현행과 같음)

<삭제>

6. (현행 제7호와 같음)

④ 교육기획개발과장-----
-----.

1. 인적자원개발(Human Resou
rces Development; HRD) 총
괄 기획

2. 교육훈련 수요조사 및 신규 교육과정의 개발

3. (생략)

4. 공무원의 공직가치 확립 및 국정과제 등 관련 교육과정의 개발 및 운영

5. 교수요원 자질향상 및 교육 훈련기법의 연구·개발

<신설>

6. (생략)

7. 교육자료의 개발·관리 및 도서관리

8. 교육생 설문조사 및 교육성적의 평가

9. 교육생의 선발·등록·학적 및 성적의 관리

10. 강의실·분임실·생활관 등 교육시설 운영

11. 정보화 계획의 수립·시행 및 시스템 운영

12. 삭제

13. 공무원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과정 설계·운영 및 평가

⑤ 전문교육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2. 교육훈련과정 설계·개발

3. (현행과 같음)

<삭제>

5. 정보화 및 이러닝 시스템 등의 구축·관리

6. 학습데이터 종합관리 및 교육효과 분석

4. (현행 제6호와 같음)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⑤ 교육운영과장-----
-----.

1. 공무원에 대한 직무교육과정의 설계·운영

2. 농업관련 민간종사자에 대한 교육과정의 설계·운영

3. 소비자에 대한 교육과정의 설계·운영

<신 설>

5. 전문교육과 교육과정에 대한 교재의 편찬·발간

6. 삭 제

7. 정보화 교육과정의 설계·운영

제29조(농림축산식품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농림축산식품부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른 한시정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별표 6과 같다. 다만,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8조제1항 단서에 따라 별표 6에 따른 총정원의 10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따로 정하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7과 같으

1. 교육훈련과정의 운영

2. 교육생의 선발·등록·학적 및 성적의 관리

3. 강의실·분임실·생활관 등 교육시설 운영

4. 교육생 설문조사 및 교육성적의 평가

<삭 제>

<삭 제>

제29조(농림축산식품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

며, 별표 7의 정원 중 2명(6급 2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한다.

②·③ (생략)

제30조(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② (생략)

③ 농식품공무원교육원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12와 같다.

④ ~ ⑥ (생략)

<신설>

제39조 [제38조로 이동]

농림축산식품부령 제360호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신설한 기구의 존속기한) 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 3명(5급 1명, 6급 -----
--.

②·③ (현행과 같음)

제30조(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② (현행과 같음)

③ 농식품인재개발원-----
-----.

④ ~ ⑥ (현행과 같음)

제38조(한시정원) 농어촌 기본소득 관련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2027년 12월 31일까지 별표 18에 따른 한시정원을 농림축산식품부에 둔다.

제39조 [제38조로 이동]

농림축산식품부령 제360호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신설한 기구의 존속기한) ① -----

제29조에 따라 이 규칙 시행으
로 신설되는 농축산물위생품질
관리팀은 2026년 2월 22일까지
존속하고, 농촌재생에너지팀은
2023년 2월 28일까지 존속한다.

②·③ (생략)

----- 2028년 2월 22일 -----

-----.

②·③ (현행과 같음)

신·구정원대비표

■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 6]

농림축산식품부 공무원 정원표(제29조제1항 본문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계	· <u>635</u>	· <u>664</u>	+29
일반직 계	· <u>631</u>	· <u>660</u>	+29
고위공무원단	· <u>14</u>	· <u>15</u>	+1
서기관 또는 과학기술서기관	· <u>28</u>	· <u>31</u>	+3
행정사무관·농업사무관·수의 사무관·시설사무관·통계사무 관·전산사무관·공업사무관· 방송통신사무관·사서사무관 또는 환경사무관	· <u>123</u>	· <u>133</u>	+10
·	·	·	
·	·	·	

행정주사 · 농업주사 · 수의주사 · 시설주사 · 통계주사 · 전산주 사 · 공업주사 · 방재안전주사 · 방송통신주사 · 사서주사 · 환경 주사 · 농업연구사 · 수의연구사 · 기록연구사 또는 농촌지도사 . .	<u>100</u>	<u>107</u>	+7
행정주사보 · 농업주사보 · 수의 주사보 · 시설주사보 · 통계주사 보 · 전산주사보 · 공업주사보 · 방재안전주사보 · 방송통신주사 보 · 사서주사보 또는 환경주사보 . .	<u>46</u>	<u>53</u>	+7
행정서기보 또는 농업서기보 .	<u>4</u>	<u>7</u>	+3
사무운영서기보 . .	<u>18</u>	<u>16</u>	-2

■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 7]

농림축산식품부 공무원 정원표(제29조제1항 단서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계	637	666	+29
일반직 계	633	662	+29
고위공무원단	14	15	+1
서기관 또는 과학기술서기관	28	31	+3
행정사무관 · 농업사무관 · 수의 사무관 · 시설사무관 · 통계사무 관 · 전산사무관 · 공업사무관 · 방송통신사무관 · 사서사무관 또는 환경사무관	126	137	+11

행정주사 · 농업주사 · 수의주사 · 시설주사 · 통계주사 · 전산주 사 · 공업주사 · 방재안전주사 · 방송통신주사 · 사서주사 · 환경 주사 · 농업연구사 · 수의연구사 · 기록연구사 또는 농촌지도사 . .	<u>87</u>	<u>93</u>	+6
행정주사보 · 농업주사보 · 수의 주사보 · 시설주사보 · 통계주사 보 · 전산주사보 · 공업주사보 · 방재안전주사보 · 방송통신주사 보 · 사서주사보 또는 환경주사보 . .	<u>51</u>	<u>58</u>	+7
행정서기보 또는 농업서기보 .	<u>2</u>	<u>5</u>	+3
사무운영서기보 . .	<u>18</u>	<u>16</u>	-2

■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 8]

농림축산검역본부 공무원 정원표(제30조제1항 본문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계	• <u>1,167</u>	• <u>1,157</u>	-10
일반직 계	<u>1,167</u>	<u>1,157</u>	-10
•	•	•	
•	•	•	
서기관 또는 과학기술서기관	<u>5</u>	<u>4</u>	-1
•	•	•	
•	•	•	
행정사무관·공업사무관·수의 사무관·농업사무관·전산사무 관·통계사무관·수의연구관 또는 농업연구관	<u>20</u>	<u>19</u>	-1
•	•	•	
•	•	•	
수의사무관	<u>10</u>	<u>9</u>	-1
•	•	•	
•	•	•	

수의사무관 · 농업사무관 · 수의 연구관 또는 농업연구관	<u>3</u>	<u>2</u>	-1
·	·	·	
·	·	·	
행정주사 · 공업주사 · 수의주사 · 농업주사 · 전산주사 · 통계주 사 · 수의연구사 또는 농업연구사	<u>62</u>	<u>61</u>	-1
·	·	·	
·	·	·	
행정주사보 · 공업주사보 · 수의 주사보 · 농업주사보 · 전산주사 보 · 통계주사보 · 수의연구사 또는 농업연구사	<u>94</u>	<u>95</u>	+1
·	·	·	
·	·	·	
수의주사보	<u>113</u>	<u>112</u>	-1
·	·	·	
전산주사보	<u>7</u>	<u>5</u>	-2
·	·	·	
·	·	·	

행정서기보 또는 농업서기보	<u>6</u>	<u>5</u>	-1
행정서기보 · 농업서기보 · 공업 서기보 또는 전산서기보	<u>11</u>	<u>12</u>	+1
운전서기보	<u>10</u>	<u>9</u>	-1
·	·	·	
·	·	·	
수의연구사	<u>93</u>	<u>92</u>	-1
수의연구사 또는 농업연구사	<u>1</u>	<u>0</u>	-1
·	·	·	
·	·	·	

■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 9]

농림축산검역본부 공무원 정원표(제30조제1항 단서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계	1,167	1,157	-10
일반직 계	1,167	1,157	-10
서기관 또는 과학기술서기관	5	4	-1
행정사무관 · 공업사무관 · 수의 사무관 · 농업사무관 · 전산사무 관 · 통계사무관 · 수의연구관 또는 농업연구관	22	21	-1
수의사무관	14	13	-1

수의사무관 · 농업사무관 · 수의 연구관 또는 농업연구관	<u>3</u>	<u>2</u>	-1
·	·	·	
·	·	·	
행정주사 · 공업주사 · 수의주사 · 농업주사 · 전산주사 · 통계주 사 · 수의연구사 또는 농업연구사	<u>64</u>	<u>63</u>	-1
·	·	·	
·	·	·	
행정주사보 · 공업주사보 · 수의 주사보 · 농업주사보 · 전산주사 보 · 통계주사보 · 수의연구사 또는 농업연구사	<u>94</u>	<u>95</u>	+1
·	·	·	
·	·	·	
수의주사보	<u>106</u>	<u>105</u>	-1
·	·	·	
전산주사보	<u>5</u>	<u>3</u>	-2
·	·	·	
·	·	·	

행정서기보 또는 농업서기보	<u>6</u>	<u>5</u>	-1
행정서기보 · 농업서기보 · 공업 서기보 또는 전산서기보	<u>11</u>	<u>12</u>	+1
운전서기보	<u>10</u>	<u>9</u>	-1
·	·	·	
·	·	·	
수의연구사	<u>90</u>	<u>89</u>	-1
수의연구사 또는 농업연구사	<u>1</u>	<u>0</u>	-1
·	·	·	
·	·	·	

■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 17]

농림축산식품부 한시조직에 두는 공무원 정원표(제35조제2항, 제36조제2항, 제37조제2항 및 제37조의2제2항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1 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단(존속기 한: 2027년 12월 31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 <u>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단</u> (<u>존속기</u> <u>한: 2025</u> <u>년 12월 31일</u>)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 <u>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단</u> (<u>존속기</u> <u>한: 2027</u> <u>년 12월 31일</u>) · · 	